

2024년 6월

SFA 안전보건 Report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SFA Safety Golden Rules

5대
준수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



규정 작업발판 사용



개인보호구 착용



장비별 유도자 배치

5대
금지
사항



중량물 하부
출입금지



가동 설비
입의 출입금지



음주/흡연(지정장소 외)
금지



안전장치
입의 해제 금지



무허가/무승인
위험작업 금지



**실천하는 안전만이
무재해를 달성한다**

CONTENTS

1. 안전 EVENT : 안전퀴즈
2. 현장 안전·보건 불합리/우수사례
3. 중대재해처벌법 제15호 판결 내용
4.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5. 화학물질 올바른 사용/관리 방법
6.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7. 24년 5월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8. 안전 FOCUS 동영상 :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술영업 1팀

김준모 수석

첨단장비사업담당

빈예진 사원

Control 4팀

한승호 사원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수령

화성 : 환경안전1파트 박서현 선임 (104동 3층)

아산 : 환경안전1파트 윤은지 선임 (301동 3층)

※ 상품 선택을 위해 담당자가 연락 예정



Q. 에탄올 세척 작업 시 착용해야하는 유기증기용 마스크의 종류는?

A.

(힌트 : 안전보건 Report 6월호를 읽어보세요 ㅎㅎ)

정답 제출 : 환경안전1파트 박서현 선임에 메일 제출 (~ 6/14)

정답자 발표 : 익월 안전보건 Report 확인

※ 당해년도 당첨자는 중복 참여 불가



상품 : 차량용 소화기 or 치킨 기프티콘 선택

안전 불합리 사례

고소 작업 간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불합리 내용	난간대가 없는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및 동일 유형 반복 불합리 발생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소 작업 간 추락 방지 조치 및 보호구 착용 ② 고소 작업 전 위험작업허가 승인 ③ 자재 낙하 위험 장소 작업구역 구획 설정

지게차 작업 유도원 미배치



불합리 내용	지게차 작업 간 유도원 미배치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게차 작업 시 작업지휘자, 유도원 배치 ② 작업구역 구획 설정 및 인원 통제

안전 불합리/우수사례

부적정 작업발판 사용



불합리 내용

부적정 작업발판 사용 (플라스틱 의자)

조치사항

- ① 규정 작업발판 외 사용 금지
- ② 작업개소에 맞는 작업발판 충분히 구비

자재 보관구역 설정, 인동선 확보



우수 내용

자재 보관구역 설정 및 인동선 확보

조치사항

자재 보관 장소 및 작업 장소에 구역 구획을 실시하며 인동선 확보

보건 불합리/우수사례

미승인 화학물질 및 부적정 소분용기 사용



불합리 내용

- 미승인 화학물질 사용
- 부적정 소분용기 (음료 PET) 사용

조치사항

- ① 화학물질 반입절차를 통한 반입 후 사용
- ② PE 재질의 적절한 소분용기 사용 (음료 PET 사용 금지)

에탄올 취급 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불합리 내용

에탄올 세척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경, 방독마스크) 미착용

조치사항

- ① 에탄올 세척 작업 시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 착용

화학물질 반입 절차 준수

화학물질반입 보안경 > 화학물질반입

기간 2024.04.01 ~ 2024.04.30

검색 범위: [선택] 검색 37쪽

선택사항 *승인완료 후 광고표지 인쇄/부착 필수 확성

<input type="checkbox"/>	No.	부서명(업종명)	반입자	현장-동	품목	반입일	만료일	승인여부	작성일
<input type="checkbox"/>	7	주인엑스피	김정민	이산세입장-203동	무수해탄올	2024-04-24	2025-04-24	승인완료	2024-04-23
<input type="checkbox"/>	6	주인엑스피	김정민	이산세입장-203동	무수해탄올	2024-04-23	2025-04-23	승인완료	2024-04-23
<input type="checkbox"/>	5	30동메이커	김성관	이산세입장-203동	NEW WAV LUBE 68T	2024-04-24	2025-04-23	승인완료	2024-04-23
<input type="checkbox"/>	4	30동 메이커	김성관	이산세입장-203동	GR 6500 광부유의 건	2024-04-24	2025-04-23	승인완료	2024-04-22
<input type="checkbox"/>	3	주인엑스피	김정민	이산세입장-401동	무수해탄올	2024-04-23	2025-04-23	승인완료	2024-04-22
<input type="checkbox"/>	2	주경산업	김정민	이산세입장-401동	이산세입장 외 2건	2024-04-09	2024-04-17	승인완료	2024-04-08
<input type="checkbox"/>	1	연승출세(ACM)	곽현중	이산세입장-103동	WD-40 의 건	2024-04-08	2024-09-30	승인완료	2024-04-15

우수 내용

화학물질 반입 절차 준수

조치사항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화학물질 반입 전 승인 실시

제15호 판결 (주식회사 엠텍)

재해개요

1. 발생장소 : 경남 양산시 주식회사 엠텍 공장
2. 발생일시 : 2022년 7월 14일 10시 20분경
3. 재해내용 : 안전문 방호장치가 고장난 상태의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재해자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

판결 : 경영책임자 징역 2년 선고 (실형)

피고인	상시근로자	선고 결과	위반 사항	비고
주식회사 엠텍 (법인)	60 명	벌금 150,000,000 원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위반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및 이행상태 점검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이행상태 점검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징역 2년	· 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이사 (피고인 B)	-	금고 1년 6개월	· 형법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무조건 처벌 받지 않습니다!

-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①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②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③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일련의 유기적인 활동

- 사업장 '위험관리' 는 한 개인만의 업무가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과제
- 사업장의 체계적인 위험관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으로 가능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 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의 기본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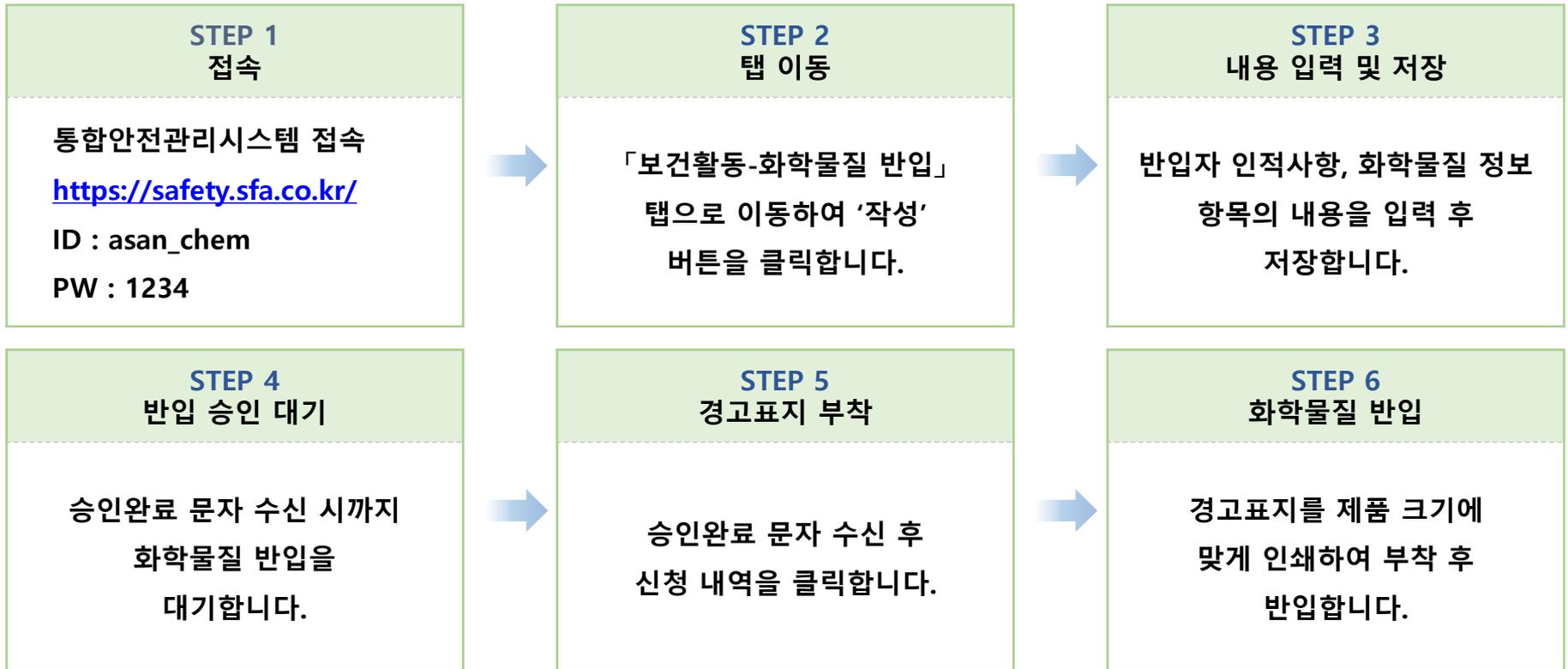
이것만은 꼭! 기본부터 실천해주세요.

- ① 첫째,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안전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고 사업장에 게시
- ② 둘째, 직원 중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 상태 체크
- ③ 셋째,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실시 (업무 전/후 10분 등)
- ④ 넷째, 작업 시작 전에는 꼭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 ⑤ 다섯째,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 설치/부착**
- ⑥ 여섯째, 사다리 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24.01.26.) 30cm 높이에서도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례가 있음.

■ 산업안전공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활용

사업장 내 화학물질 사용 실태의 파악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학물질 반입 절차를 운영합니다.
화학물질 반입자는 화학물질 반입 3일 전까지 반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반입절차



경고표지 부착방법

본품 부착용

WD-40



위험

유해위험문구

- 극인화성 가스 ○ 극인화성 에어로졸 ○ 압력용기: 열이 가해지면 파열할 수 있음
-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공급자 정보 : 백스인터코퍼레이션㈜

반입자	홍길동	반입장소	101동
사용기간	23.05.09 ~ 23.05.31	사용부서 및 SFA 담당자	환경안전1파트 고병준 선임

검사자 : 환경안전1파트 윤은지(041-539-9666)

소분용기 부착용

WD-40



위험

공급자 정보 : 백스인터코퍼레이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하시오.

반입자	홍길동	반입장소	101동
사용기간	23.05.09 - 23.05.31	사용부서 및 SFA 담당자	환경안전1파트 고병준 선임

검사자 : 환경안전1파트 윤은지(041-539-9666)

남용 방지를 위해 반입일 이후 경고표지 삭제

경고표지 부착방법

본품 부착용



소분용기 부착용



남용 방지를 위해 반입일 이후 경고표지 삭제

에탄올 와이퍼 폐기 방법

부적절한 폐기 방법



올바른 폐기 방법



에탄올 와이퍼 폐기 방법

부적절한 폐기 방법



올바른 폐기 방법



에탄올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에탄올 세척 작업 시 유기증기용 **방독마스크** 반면형 착용



- 필터 종류 : 3M 6006K 등
- 필터 제조일자 기재 후 사용
- 필터는 6개월 ~ 1년 교체 권장

화학물질 관리 방법

화학물질 지정 장소 보관



화학물질 보관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적용대상 : 본 제품의 제조자, 사용자, 대리점, 밀러, 운송자 등 모든 취급자 및 관리자

MSDS 번호 : 제품 유에 대상
(2019년 부록 3725~3920, 산업안전보건법 부록 3920~3911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input type="checkbox"/> 방호구 착용 2. <input type="checkbox"/> 방호복 착용 3. <input type="checkbox"/> 방호장갑 착용 4. <input type="checkbox"/> 방호안경 착용 5. <input type="checkbox"/> 방호모 착용 6. <input type="checkbox"/> 방호화 착용 7. <input type="checkbox"/> 방호신발 착용 8. <input type="checkbox"/> 방호장갑 착용 9. <input type="checkbox"/> 방호안경 착용 10. <input type="checkbox"/> 방호모 착용 11. <input type="checkbox"/> 방호화 착용 12. <input type="checkbox"/> 방호신발 착용
가. 제품명	더블유디-40(WD-40)	
나. 제품의 광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광고 용도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금속(철)는 방지, 금속 마찰면 윤활성 부여 용도의 사용금지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정보 제조사명 주소 긴급연락전화 담당부서	벤스인더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 27길 7-15 TEL : 02)571-4040 FAX : 02)575-1336 기술제품관리부	
2. 유해·위험성		1. <input type="checkbox"/> 방호구 착용 2. <input type="checkbox"/> 방호복 착용 3. <input type="checkbox"/> 방호장갑 착용 4. <input type="checkbox"/> 방호안경 착용 5. <input type="checkbox"/> 방호모 착용 6. <input type="checkbox"/> 방호화 착용 7. <input type="checkbox"/> 방호신발 착용 8. <input type="checkbox"/> 방호장갑 착용 9. <input type="checkbox"/> 방호안경 착용 10. <input type="checkbox"/> 방호모 착용 11. <input type="checkbox"/> 방호화 착용 12. <input type="checkbox"/> 방호신발 착용
가. 유해·위험성분류	고압가스 : 액화가스 인화성액체 : 구분 1 중인 유해성 물질 : 구분 1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제 등) 관련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있음	
나. 예방조치분류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외분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분류	H220 극인화성 가스 H222 극인화성 에어로졸 H229 압력용기: 열이 가해지면 파열될 수 있음 H280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예방조치분류 예방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분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 취급하지 마시오.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 금연 P211 화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본사하지 마시오. P251 사용 후에도 구멍을 뚫거나 태우지 마시오.	
 MK WD-40(Rev. 28_220722)		함유량(%) 88 ~ 42 0 ~ 15 3 ~ 12 28 ~ 32 3 ~ 6 < 1.2 방출량(%) 2,220722) 2,220722)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함.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근로자 건강진단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의무로 함.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특수, 수시 건강진단 실시해야 함.



건강진단의 종류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실시 주기
일반 건강진단	상시 근로자	비사무직 1회/1년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	업무 배치 전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에 1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수시 건강진단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의 종류

■ 일반 건강진단

-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근로자의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인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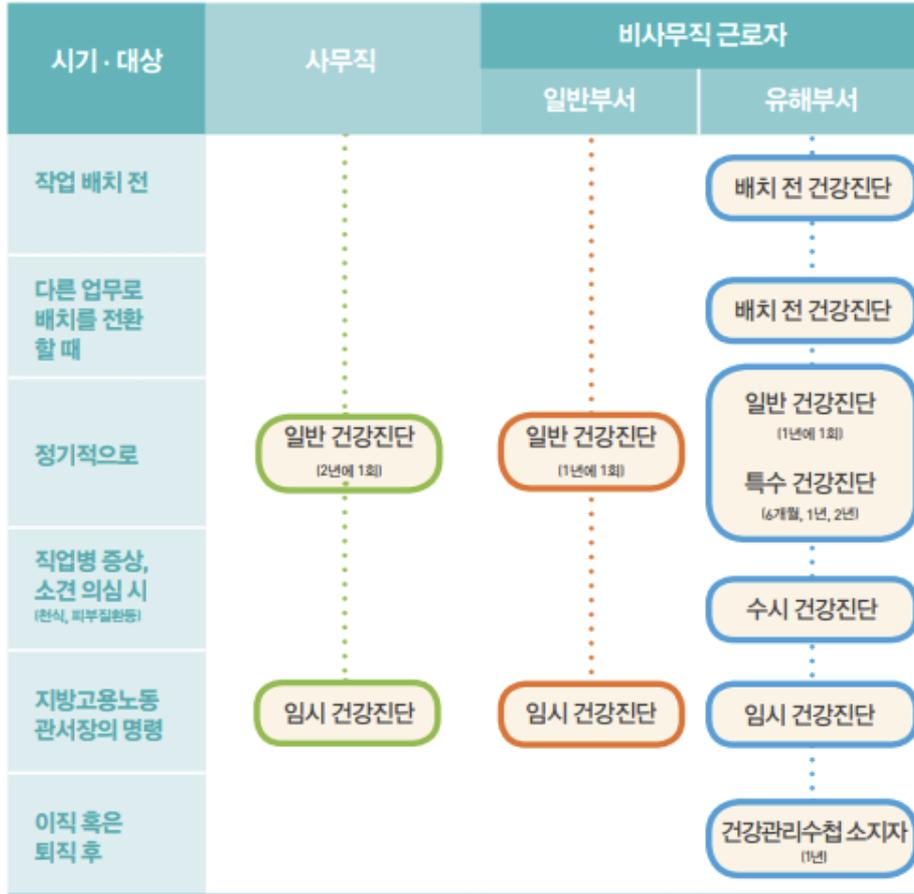
■ 특수 건강진단

-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24개월 주기로 실시
-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추후 업무상 질병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건강진단의 실시 절차 및 결과 처리



- ✓ 건강진단 결과는 30일 이내에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에게 통보
- ✓ 질병이나 직업병 유소견자에게는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통보
- ✓ 2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건강진단의 실시 절차 및 결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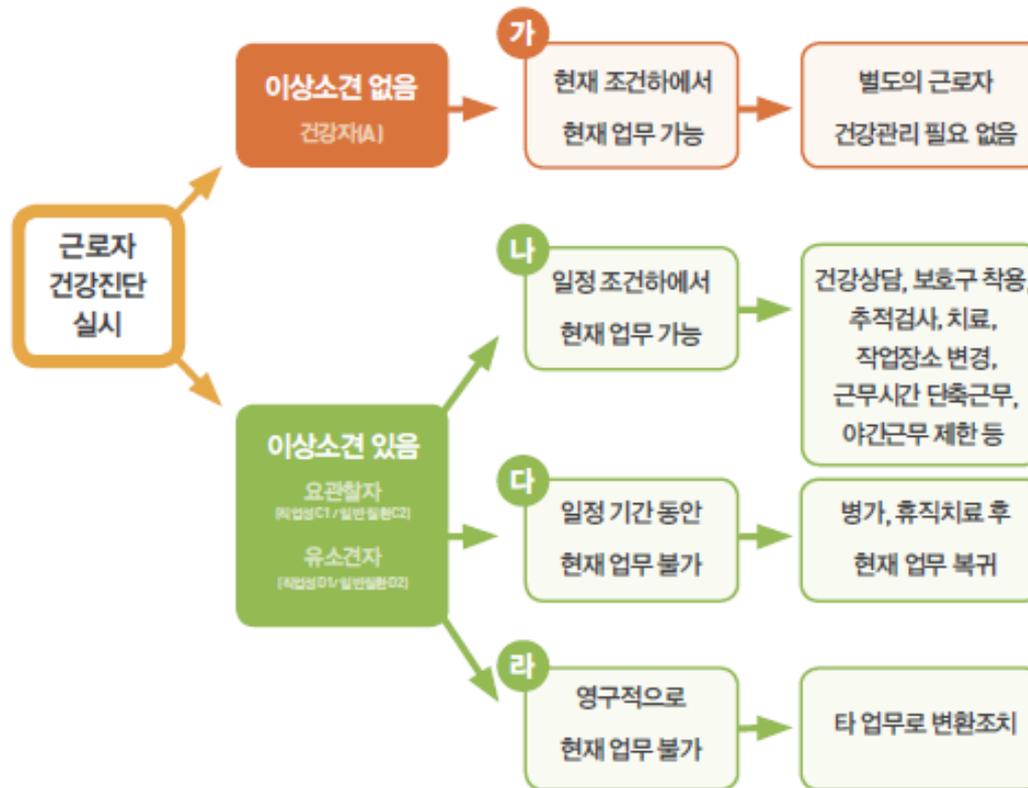
■ 고용노동부가 정한 건강관리 기준에 의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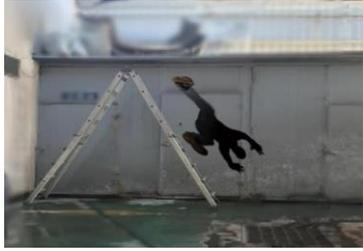
일반 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D판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 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의 실시 절차 및 결과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수검자를 기술하는 예



(사례 1) 사다리 추락 사고

발생일	24년 5월	사고 경위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참고 지붕위에 적재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재해자가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유형	추락			
부상정도	사망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승하강하며 작업장소로 사용하는 공간은 안전한 계단 등을 설치하여 작업 - 사다리 작업 시는 2인1조 작업 철저 	

(사례 2) 지게차 깔림 사고

발생일	24년 5월	사고 경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석 옆 탑승용 계단에 앉아서 이동 하던 재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지게차 바퀴에 깔려 사망.	
유형	깔림			
부상정도	사망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접촉 위험지역에 출입해선 안 되고, 운전석 이외에는 절대 탑승을 금지. - 지게차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사례 3) 판넬 전도 사고

발생일	24년 5월	사고 경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판넬보관대 안쪽에서 자재 분류 작업 중 판넬이 쓰러지며 판넬 보관대 기둥에 끼여 사망	
유형	전도			
부상정도	사망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조치 실시 후 작업 실시 	

VIDEO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https://youtu.be/DOsP_C9_3CY



출처 : 안전보건공단안젤이